

[일련번호 : 24]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청소년증 발급 및 파기 업무 처리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에 따르면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청소년사업안내」(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증 대리 신청 시 발급신청서 상의 서명은 대리인 이름으로 하여 대리인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장이 청소년증을 송부받은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교부인을 날인하고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청소년증의 파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

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 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시·군·구에서 취합하여 청소년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의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 기재 등을 누락하거나, 청소년증 교부 시 발급대장에 본인 혹은 대리인의 서명 날인이 없는 채로 교부하였으며, 1년 이상 경과한 청소년증은 가족정책과에 송부하여 파기처리를 해야함에도 2022년~2024년 기간 동안 1년 이상 장기보관하거나 임의로 자체폐기를 하는 등 청소년증 발급 및 파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1] 청소년증 파기업무 부적정 내역

구분	부적정 내역
2022~2024년	1년 이상 미수령 증은 가족정책과 공문 송부하여 폐기하여야 하나 장기보관하거나 자체 폐기

[표2] 청소년증 발급업무 부적정 내역

연번	접수일자	성명	대리인서명	발급대장	비고
1	20220902		해당없음		파기확인
2	확인불가		해당없음	미기재	
3	확인불가		해당없음	미기재	
4	20220304		해당없음	미기재	
5	20220222		해당없음	미기재	
6	20220222		해당없음	미기재	
7	20220215		해당없음	미기재	
8	20220204		해당없음	미기재	
9	20220111		해당없음	미기재	
10	20220104		해당없음	미기재	
11	20231215		해당없음		파기확인
12	20231130		해당없음	미기재	
13	20231124		해당없음	미기재	
14	20230810		해당없음	미기재	
15	20230316		해당없음		파기확인
16	20230316		해당없음		파기확인
17	20240902		누락	기재	
18	20240621		해당없음	미기재	
19	20240412		누락		파기확인
20	20240131		해당없음	미기재	
21	20240115		해당없음	미기재	
22	20240108		해당없음	미기재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청소년증 발급 및 파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